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기금의 사용)

8.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에너지전환(이하 “에너지 전환”이라 한다)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

가. 발전사업자(에너지전환에 따라 발전사업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사업자를 포함한다)

나.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에너지전환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 예정구역 지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업자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사업자의 비용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8호의 신설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전환에 관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수정안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4조(기금의 사용) ----- ----- ----- -----.
1. ~ 7. (생략)	1. ~ 7. (좌동)
8. (신설)	8.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기본계획에 반영된 에너지전환(이하 “에너지전환”이라 한다)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
	가. 발전사업자(에너지전환에 따라 발전사업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사업자를 포함한다)
	나.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에너지전환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업자를 포함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사업자의 비

현행	수정안
	<u>용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8호의 신설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 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전환에 관한 사항부터 적용한다.</u>